

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: 2003. 3. 13
제 출 자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가. 보건소 수가조례(별표)항목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 운전면허 응시·적성검사서, 질병진단서, 건강진단서 등의 종류가 있음에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세분화가 필요함
- 나. 보건소 수가조례(별표)항목 중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는 보건복지부령 「위생분야종사자등의진단규칙」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 조례상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개정해야 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보건소수가조례 (별표) 제증명발급수수료 중 '2.일반진단서'를 '운전면허응시·적성검사서, 질병진단서, 건강진단서'로 세분하고
- 나. '5.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'를 삭제함.

3. 관계법령

- 가. 지역보건법제14조
- 나. 보건복지부령 「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10조 (수수료)

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재증명발급수수료중

‘2.일반진단서’를 ‘2.질병진단서, 3. 운전면허응시·적성검사서, 4. 건강진단서’로 세
분하고 ‘3’을 ‘5’로, ‘4’를 ‘6’으로, ‘6’을 ‘7’로, ‘7’을 ‘8’로, ‘8’을 ‘9’로 하며 ‘5.위
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’는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	
제증명발급수수료				제증명발급수수료					
구분	기준	수수료(원)		비고	구분	기준	수수료(원)		비고
		기본 수수료	검사료				기본 수수료	검사료	
1.생략	1통	500	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		1.(현행과같음)	1통			
2.일반진단서					2.질병진단서		500		
<신설>					3.운전면허용시 ·적성검사서		500		
<신설>					4.건강진단서		500		
3.특별진단서	1통	2,000		X - 선, 간염검사 포함	5.-----	“			
4.사체검안서		5,000			6.-----	“			
5.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		2,000			<삭 제>	“			
6.사망진단서		500			7.-----	“			
7.기발급 증명서추 가발급		300			8.-----	“			
8.1통초 과발급		100			9.-----	“			